

외화대출 사례집

2018. 10

국제국 외환업무부 외환건전성조사팀

서 문

외화대출 용도제한 제도는 외화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 외화대출을 허용하면서도 무분별한 외화대출로 인한 기업의 환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도한 외채 증가를 억제하여 우리나라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대다수 외화대출 취급기관들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외화대출을 적정하게 취급함에 따라 동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 취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 시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위규 외화대출 취급을 예방하고자 2014년 「외화대출 사례집」을 펴낸 바 있습니다.

금년 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의 건의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2018.7.2일 「외화대출 취급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전 사례집의 답변을 최신 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최근 자주 문의되는 유형의 사례를 추가하여 「외화대출 사례집」을 개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한국은행에 접수된 외화대출 관련 문의 중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취급하고자 하는 외화대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례집만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건전성조사팀(02-759-572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월
한국은행 국제국장



1. 외화대출 용도제한 기본방향	1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1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2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외화대출]	2
2.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	3
[대내 외화사모사채]	3
[국내SPC에 대한 외화대출]	4
[스왑거래 연계 원화대출]	4
[외화예금 담보 외화대출]	5
[외화환매조건부채권 · 외화콜 매수, 외화팩토링 거래]	5
[제2금융권 외화대출]	6
3.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	7
[수입대금 및 중계무역의 수입대금 지급]	7
[해외직접투자]	9
[비거주자 발행 유가증권 매입]	10
[대외외화차입금 또는 해외채무 상환]	11
[해외현지법인앞 운전자금 송금]	12

4.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사용 시설자금 외화대출 ... 13

[중소제조업체 해당 여부]	13
[중소기업 유예기간중 외화대출 가능 여부]	15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인정 범위]	16
[사후관리]	17

5. 외화대출 사후관리 19

[해외 실수요 자금의 실수요 증빙 인정기간]	19
[기 집행 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 증빙 인정기간]	20
[실수요 증빙 서류]	21
[만기연장 및 대환시 실수요 증빙]	23
[대출회수 조치]	24
[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의 불일치]	25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을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	27
[일괄송금 가능 여부]	27

6. 기타 외화대출의 허용 여부 등 28

[타행대환]	28
[수입거래 결제자금 대출]	30
[신디케이션 외화대출]	31
[개별적 외화대출 채무인수]	32
[포괄적 외화대출 채무인수]	33
[공동사업자간 외화대출 채무인수]	35
[상속인의 외화대출 채무인수]	36
[대외결제 통화와 외화대출 취급통화 간 불일치 허용]	37

7.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	38
[은행 내규에 의해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38
8. FAQ	39
[은행간 외화대출채권 매매]	39
[통화선도, FX스왑 계약체결 가능 여부]	40
[타행대환 시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변경]	41
<부록 1> 외화대출 취급지침 (2018.7.2일 제6차 개정)	42
<부록 2> 「외화대출 사례집」 신규 비교표	50

1

외화대출 용도제한 기본방향

질의내용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사례1>

외국환은행(이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이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SPC에 외화대출을 실행하려 하는데 동 외화대출이 용도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사례2>

해외SPC에 외화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SPC는 동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외화대출이 용도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사례1, 2>

해외SPC 등 비거주자에게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용도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외화대출 취급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7조(정의)

질의내용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국내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이 거주자에게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용도제한 적용 대상인가요? 국내은행은 동 외화대출을 역외계정이 아닌 외화대출금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국내영업소에 한정되므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거주자에게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계정항목의 역내외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질의내용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외화대출)

A(거주자)는 B(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 지분 매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A는 대출금을 해외당국의 승인 후 B의 현지 계좌로 입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과정에서 해외송금이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주자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외화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

질의내용

(대내 외화사모사채)

<사례1>

국내SPC가 타 기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 형태의 외화사모사채를 국내에서 발행하려 합니다. 외국환은행이 동 외화사모사채를 매입할 수 있나요?

<사례2>

증권사가 국내SPC가 발행한 외화사모사채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해당 외화사모사채는 신탁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것으로 증권사의 외화사모사채 인수대금은 국내SPC를 거쳐 신탁업자에게 전달되며 신탁업자는 동 자금을 원달러 스왑거래를 통해 원화증권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례1>

외국환은행이 국내SPC가 발행한 대내 외화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SPC에게 외화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SPC의 자금용도가 해외사용 실수요인 경우에만 외국환은행은 대내 외화사모사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증권사의 외화사모사채 인수대금이 최종적으로는 원화로 환전되어 원화증권 투자에 사용되므로 해외사용 실수요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동 외화사모사채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국내SPC에 대한 외화대출)

국내SPC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송금하고자 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은 해외건설 자재구입 등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국내SPC는 대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한 후 잔액을 현지법인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SPC에게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SPC가 비거주자인 현지법인에게 대출하는 것은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내SPC가 대출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수료를 제외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스왑거래 연계 원화대출)

외국환은행이 국내SPC에게 원화대출을 실행하고 동 대출금을 달러로 전환하는 통화스왑 거래를 체결한 후 국내SPC의 국내기업에게 달러 대출금을 지급하는 스왑거래 연계 원화대출은 용도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스왑거래 연계 원화대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외화예금 담보 외화대출)

외화예금 담보 외화대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여부는 외화대출의 담보 유무와 무관합니다.

질의내용

(외화환매조건부채권 · 외화콜 매수, 외화팩토링 거래)

<사례1>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와 거래하는 외화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및 외화콜 매수가 외화대출로 분류되나요?

<사례2>

국내판매업체가 국내구매업체로부터 원자재를 판매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하는 외화팩토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대상인가요?

답변

<사례1>

외국환은행의 외화RP, 외화콜 매수의 외화계정과목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2>

외화팩토링도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증권 매입은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10조(외화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질의내용

(제2금융권 외화대출)

<사례1>

외국환은행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증권사는 동 자금을 해외 PF사업자에게 대출하고자 합니다.

<사례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대출, 외화리스, 외화팩토링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국내 대기업과 sales and lease back 거래를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례1>

외국환은행이 제2금융권에게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제2금융권의 자금용도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PF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하여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대출, 외화리스, 외화팩토링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는 외화대출은 용도제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해당 금융상품의 용도가 해외사용 실수요 또는 중소기업체 시설자금일 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사례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국내 대기업과의 sales and lease back 거래는 매매 거래에 해당되어 해당 거래의 대금지급은 해외사용 실수요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외화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

질의내용

(수입대금 및 중계무역의 수입대금 지급)

<사례1>

수입업체가 수입중개업체에게 물품 수입을 의뢰하고 수입대금 지급용으로 외화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외화대출 자금은 거주자인 수입중개업체에게 수입대금 결제용으로 지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외판매업체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해외사용 실수요로 볼 수 있나요?

<사례2>

수입업체가 일본기업과 물품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수입대금을 해당 일본기업의 한국지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물품의 수입대금 지급용으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3>

국내기업이 동사 미국현지법인 자회사와 수입계약을 맺고 일본기업과는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현지법인이 물품을 일본기업으로 직접 수출하게 되는데 국내기업이 미국현지법인 자회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4>

국내기업이 동사 해외현지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한 후 해외현지법인이 동 물품을 국내 중계무역업체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국내 중계무역업체는 수입한 물품을 중국으로 재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중계무역업체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물품 구입을 지급할 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결제자금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직접 송금될 예정입니다.

<사례1>

국내수입업체와 수입중개업체 간 거래는 거주자간 거래에 해당되어 외화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동 거래에서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하는 거래는 수입중개업체와 해외판매업체 간 거래입니다. 다만, 차주인 수입업체가 해외판매업체와 수입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입대금을 직접 송금할 경우에는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하여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2>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수입업체의 물품결제대금지급은 거주자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외화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일본기업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3>

국내본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입결제자금은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되어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례의 경우 물품이 국내로 운송되지 않으므로 제3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수입면장, 수입계약서 및 수출업자와의 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실수요를 증빙하고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4>

해당거래의 용도는 해외사용 실수요로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 수입결제자금이더라도 수입면장 등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수출대금 입금서 등 중계무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갖추고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해외직접투자)

<사례1>

차주인 국내기업이 해외지점에게 사업 확장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요?

<사례2>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3>

국내기업이 해외법인 지분매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았습니다. 국내기업이 해외법인 지분매각 시 외화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사례1>

지점, 사무소 등 해외영업소 설치·확장·운영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해외 실수요로 인정되므로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2>

해외자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화대출은 불가합니다.

<사례3>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본래 목적이 소멸되면 대출자금은 즉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비거주자 발행 유가증권 매입)

<사례1>

국내기업이 국내금융기관(캐피탈사, 보험사 등)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수대상 해외주식의 소유자가 국내금융기관이어서 주식 인수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 해외주식 인수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사례2>

국내증권사가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주식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외국환은행 외화대출을 받아 동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나요?

답변

<사례1>

차주가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 발행 주식소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인수자금 지급이 거주자간 거래이므로 외화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증권 매입이 해외 실수요로 인정되려면 발행시장 매입 시에는 발행자가 비거주자, 유통시장 매입 시에는 소유자가 비거주자여야 하며 대출자금은 해외로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사례2>

해외법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용도는 해외사용 실수요에 부합되므로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 발행 유가증권 매입은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대외외화차입금 또는 해외채무 상환)

<사례1>

국내기업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외외화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2>

해운업체(A)가 해외SPC(B)를 설립하였는데 SPC는 국내금융기관(C)으로부터 선박금융을 받아 해외에서 선박을 매입하였습니다. SPC가 선박을 재매각하고자 하는데 선박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중 일부만 상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내해운사가 부족한 자금을 외국환은행(D)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상환할 수 있나요? 만약 SPC가 처음에 국내 금융기관(C)이 아닌 해외금융기관(C')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상환하기 위한 외화대출은 가능한가요?

답변

<사례1>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은 비거주자이므로 동 기관 대출금 상환은 해외 사용 실수요에 해당되어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2>

국내금융기관에게 받은 외화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해외사용 실수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환은행(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SPC가 처음에 해외금융기관(C')에게 외화대출을 받았다면 동 외화대출 상환 용도는 해외사용 실수요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외국환은행(D)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해외현지법인앞 운전자금 송금)

<사례1>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전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외화대출 취급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2>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의 운전자금이 아닌 시설자금 대여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례1>

국내본사의 해외현지법인(해외사무소, 해외자회사, 해외SPC 등 포함)앞 운전자금 외화대출은 해외직접투자 용도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본사가 해외현지법인 설립 관련 지분 투자를 위해 외화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해외직접투자 목적 인지를 판단하여 외화대출을 취급해야 합니다.

<사례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시설자금 대여는 해외 실수요에 해당되어 외화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4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사용 시설자금 외화대출

질의내용

(중소제조업체 해당 여부)

<사례1>

도소매업 매출 비중이 80%, 제조업 매출이 20%인 중소기업이 제조업 영위를 위한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2>

새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장시설 매입을 위하여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3>

기존 중소도소매업체가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사례4>

기존 중소도소매업체가 제조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제조업체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란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활동*의 종류가 제조업인 업체를 의미합니다.

* 전년도 기준 제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활동

<사례1>

중소제조업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년 제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커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기업의 제조업 매출이 20%에 불과하다면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므로 외화대출은 불가합니다.

<사례2>

새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3>

다른 업종과 병행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전년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4>

해당기업은 외화대출 취급시점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화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중 외화대출 가능 여부)

중소제조업체의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는데 3년간 중소기업 유예혜택을 받습니다. 해당기간 중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 취급 시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동 법 제2조 유예조항의 취지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동 외화대출의 타행대환은 불가능하며 만기연장만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 제3항

질의내용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인정 범위)

중소수출업체가 과거 용도제한 조치 이전에 골프연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자금사정악화로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중소기업에게 동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체는 채무인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인수인이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시설 취득 용도의 신규 외화대출이 가능하므로 유형자산(토지, 공장, 기계장치 등)을 양수하면서 동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기취급된 외화대출을 채무인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취급은행은 신규대출과 같이 기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현물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은 그 목적이 중소기업체 영업지원에 있으므로 골프연습장과 같이 제조업 생산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취득 용도의 외화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사후관리)

<사례1>

국내 중소기업체가 공장을 매입하면서 동 시설을 담보로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은 후 해당 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제3자가 이후에도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중소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례2>

중소기업체가 공장 구입목적으로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공장을 처분한 자금으로 다른 시설을 취득하고자 대상을 물색 중입니다. 해당 업체는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의 외화대출을 유지하면서 담보만 해당 업체 소유의 부동산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담보변경이 가능한가요?

<사례3>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만기연장을 실행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을 새로이 징구해야 하나요?

<사례1>

국내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취급 당시의 시설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시설을 처분한 경우 대출의 목적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담보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외화대출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례2>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은 외화대출 취급 당시의 시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처분한 경우 대출의 목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차주는 기존 외화대출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합니다. 동 사례의 경우 외화대출의 목적인 공장을 처분하였으므로 차주는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이후 제조업 관련 시설취득 시 신규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만기연장 시 본래의 대출목적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최초 대출 취급 시의 실수요 증빙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5

외화대출 사후관리

질의내용

(해외 실수요 자금의 실수요 증빙 인정기간)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 외화대출 취급 시 차주의 계좌에 송금한 후 1개월간 대출자금의 자금인출 및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 내에 차주의 상대방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나요?

답변

해외사용 실수요 대출자금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출은행이 대출 실행일에 바로 해외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주의 편의를 위해 외화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가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화환전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출은행은 대출자금의 불필요한 인출 및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기 집행 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 증빙 인정기간)

<사례1>

외화대출 취급지침상 시설자금에 해외시설자금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동 자금이 이미 집행된 경우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요?

<사례2>

차주가 제조공장 공사대금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국내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우선 자기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차후에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례1>

국내시설자금뿐 아니라 해외시설대 수입 등도 시설자금에 해당되며 이 경우 6개월 이내 기 집행된 자기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됩니다.

<사례2>

차주가 자기자금 등으로 미리 시설자금을 집행한 경우 동 자금이 시설 자금용도임이 확인된다면 6개월 이내에 자기자금 등으로 투자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총금액 기준으로 체결된 것과 관계없이 매회 분할된 공사대금이 자기자금으로 송금될 때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같은 액수의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질의내용

(실수요 증빙서류)

<사례1>

차주와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무역거래자금 지급 용도의 외화대출 증빙서류로 인정이 되나요?

<사례2>

차주가 제출한 증빙서류 요약목록 등도 실수요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요약 목록 중 일부 서류만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례3>

수입결제자금을 위한 외화대출을 타행대환 하고자 합니다. 최초대출 취급은행으로부터 수입결제용도로 대출금이 송금되었다는 해외사용 실수요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타행대환 시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가요?

<사례4>

차주가 비거주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을 해외에서 인도받기로 한 관계로 수입면장을 증빙서류로 구비할 수 없고 L/C도 타행에서 개설한 관계로 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수입결제용도로 사용되는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 외화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본 제출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사례1~3>

외국환은행이 갖춰야 할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례에서 언급한 당사자간 이메일 내용, 증빙서류 요약목록과 원본 일부, 해외사용 실수요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타행발행 실수요확인서 등은 유효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4>

외화대출 취급은행에게 이중대출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은 원칙적으로 거래증빙 원본을 징구하여 외화대출 실행 사실을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관행 등에 따라 원본 징구가 어려운 경우는 이중대출방지 협약서와 원본대조필 사본을 징구하고 사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만기연장 및 대환시 실수요 증빙)

<사례1>

중소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 외화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을 새롭게 청구해야 하나요? 또한 만기연장 시점에서 차주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례2>

차주가 외화대출을 타행대환을 하려고 하는데 실수요 증빙을 다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사례1>

만기연장의 경우 최초 대출 취급시의 실수요 증빙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연장 시점에서 차주가 중소기업체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만기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은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책임은 대출 취급은행에 있습니다.

<사례2>

타행대환은 신규대출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실수요를 증빙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대출회수 조치)

<사례1>

국내수입업체에 수입결제자금 외화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대출실행 이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취급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례2>

외화대출을 실행하여 타행을 통해 송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까지 타행에서 대출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대출취급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사례1>

대출취급은행은 외화대출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적 지연 등에 따른 계약파기 시 외국환은행은 해당 대출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2>

대출자금의 용도의 사용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감안하여 모든 외화대출은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대출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 대출취급은행은 대출자금을 즉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의 불일치)

<사례1>

추심방식의 무역결제인 D/P(document against payment) 및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추심결제은행이 필요하여 국내기업이 A은행을 추심결제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국내기업이 B은행에게 무역결제 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자금을 추심결제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나요?

<사례2>

차주가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태국 바트화가 필요한 데 대출취급은행에서는 바트화를 취급하지 않아 대출금을 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한 후 바트화로 환전하여 해외송금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3>

신디케이션 외화대출의 경우 주관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례4>

차주가 편의상(근거리라는 이유, 공휴일인 결제일에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유, 주거래은행이라는 이유 등) 대출취급은행이 아닌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5>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수입결제자금을 우선 송금한 후 외화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송금은행과 대출취급은행이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

대출자금은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직접 해외송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 대출자금의 용도와 미사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해외송금이 대출 실행일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외화대출 취급은행 이외 은행에서의 송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례1>

추심결제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D/P, D/A 용도의 외화대출은 특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어 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송금은행의 불일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례2>

대출취급은행이 결제통화를 취급하지 않아 타 외국환은행을 통한 환전이 불가피한 경우 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송금은행의 불일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은행은 송금관련 증빙을 징구하고 사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3>

신디케이트론도 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취급은행과 송금은행이 달라도 무방하며 대출취급은행은 별도로 외화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례4>

대출취급은행이 대출금 해외송금 내역(차주명의 일별잔액 증명서) 등 대출자금의 용도와 미사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해외송금이 대출 실행일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 타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사례5>

자기자금이 수입대금으로 이미 송금되었다면 해당 자금은 적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대출취급은행은 차주계좌로 외화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을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

국내기업이 수입결제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아 해외 수출기업에게 결제 자금을 송금하려 합니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해외기업이 국내에 대외계정을 갖고 있는 경우 동 국내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된 자금이 국내사용 가능성이 없다면 동 계정으로 송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출취급은행은 송금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해외로 나간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일괄송금 가능 여부)

Sight L/C 만기결제용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여러 건 집행한 후 일괄적으로 외화대출을 취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계약 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용도의 증빙 확인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면 외화대출의 일괄 취급 여부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6

기타 외화대출의 허용 여부 등

질의내용

(타행대환)

<사례1>

A은행에서 취급한 외화대출을 B은행에서 원화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환시 이전 대출금액의 일부만 대환할 수 있나요?

<사례2>

용도제한 적용대상이 아닌 비거주자(해외지점 또는 해외은행 등)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국내외국환은행이 대환하는 경우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사례3>

유산스 L/C 만기 결제용 외화대출을 A은행에서 타행대환 하였는데 B은행이 다시 타행대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 B은행은 A은행이 구비하고 있는 거래증빙서류를 차주로부터 모두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나요?

<사례1>

타행에서 취급한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타행대환하는 것은 외화대출을 상환하고 원화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또한, 타행대환 시 기존 대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대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액보다 대환금액이 더 큰 경우 초과금액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사례2>

타행대환은 신규대출에 준하는 것이므로 용도 및 관계증빙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용도제한 적용 대상이므로 해외 실수요 및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용도일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사례3>

유산스 L/C 만기 결제자금을 위한 외화대출은 타행대환이 허용되며 적법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타행대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타행대환은 신규대출에 준하므로 해외사용 실수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A은행의 구비서류가 증빙으로서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 책임은 B은행에게 있으므로 B은행이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주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대환시 관계증빙의 사후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A은행에 상환한 대출금상환영수증은 거래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수입거래 결제자금 대출)

<사례1>

L/C 개설 시 보증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사례2>

수입업체가 L/C 한도가 없어 모회사가 L/C를 개설하여 대신 수입대금을 결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모회사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례1>

외국환은행이 보증금 전액을 향후 수입결제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해외 사용 실수요로 볼 수 있으므로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례2>

모회사가 수입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외사용 실수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외화대출을 받는 경우 해외사용 실수요로 인정되지만 동 대출자금을 모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거주자간 거래가 되어 외화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신디케이션 외화대출)

<사례1>

신디케이션 외화대출 중 일부를 대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거래증빙 서류를 징구해야 하나요?

<사례2>

기존 신디케이션 외화대출에 대출은행이 추가되는 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나요?

<사례3>

국내증권사가 비거주자 대상 해외 신디케이트론 취급 용도의 외화대출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례1>

기존 외화대출이 해외 실수요 혹은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용도이고 그 용도가 대환시점에서 소멸되지 않았다면 신디케이션 외화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시 증빙서류는 새롭게 징구해야 하며 과거 대출 취급시의 증빙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및 사후관리의 책임은 대환은행에 있습니다.

<사례2>

신규 대출은행은 실수요 증빙서류를 새롭게 징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은 신디케이션에 참여하는 개별 은행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3>

증권사가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것은 해외 실수요에 해당되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개별적 외화대출 채무인수)

<사례1>

수입결제자금용도로 외화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가 사업이 어려워져 가족이 동 외화대출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2>

해외SPC가 국내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국내법인이 인수하여 차주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외화대출채무 인수 시 차주 변경에 따른 신규대출이 발생하므로 인수인이 중소기업체 시설자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간합병, 영업양도, 상속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사례1>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의 경우 결제가 완결되면 그 목적이 소멸되므로 인수인이 동 채무를 개별적으로 인수받아 차주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례2>

비거주자의 외화대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를 국내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고 해당 시설을 이전받은 경우에만 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포괄적 외화대출 채무인수)

<사례1>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장설립을 위해 국내시설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본인이 대주주인 도소매업체를 설립 하였습니다. 차주가 중소기업체 사업일체를 도소매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데 도소매업체가 기존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승계할 수 있나요?

<사례2>

숙박업체 주주들이 법인을 해체하고 주주 중 한명에게 사업일체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체는 설립 당시 숙박시설 매입을 위해 국내시설 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숙박업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사업 인수인이 대출채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사례3>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용 창고 매입을 위하여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 화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기존 사업 일체를 다른 도소매업체 법인에게 매각하고 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도소매업체 법인은 기존 국내 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을 승계할 수 있나요?

<사례4>

개인사업자가 외화대출 용도제한 이전에 국내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받아 이를 만기연장해 왔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자번호를 폐업 시키고 신규 사업자번호를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포괄적인 영업승계로 보고 해당 외화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인수인이 신규대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합병, 영업양수도, 상속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외화대출채무 인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례1~4>

양도인과 인수인 간 권리의무가 영업양도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외화대출 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 여부는 관련 법률, 계약서, 한국은행 해석,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외화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수된 외화대출은 현행 규정상 용도제한 대상이므로 기한연장만 가능하고 대환은 불가능하며 용도 소멸 시 즉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공동사업자간 외화대출 채무인수)

<사례1>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A, B가 공동으로 사업(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은행관행상 A 단독명의로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B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동 외화대출의 차주를 A에서 B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2>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C, D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는 공동명의 재산을 제공하였으나 차주는 은행관행상 C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C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D에게 매각하고 공동사업에서 철수하고자 하는데 차주를 C에서 D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개별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외화대출 취급에 있어서는 별도의 차주로 인정되며 차주의 명의변경은 양수인이 신규로 외화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외화대출 차주 변경 시 양수인이 해외사용 실수요 또는 중소제조업체 시설자금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례1>

공동사업자 대출의 개별인수는 담보제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2>

공동사업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간에 포괄적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 외화대출도 이전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상속인의 외화대출 채무인수)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사업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에게는 부인 및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데, 부인이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채무도 단독으로 인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부인(임대업 개인사업자) 단독명의로 차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비제조업체 국내사용 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취급이 허용되지 않고 기존 채무인수를 위한 차주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을 이유로 망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승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주 변경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상속의 형태(단독상속, 공동상속), 상속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다만, 대출취급은행은 최초 대출과 관련된 관련 증빙서류 및 포괄승계(상속)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질의내용

(대외결제 통화와 외화대출 취급통화 간 불일치 허용)

<사례1>

중소제조업체 시설자금용도의 달러화 외화대출을 타행대환하면서 엔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사례2>

최초 취급 시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이었는데, 2011년 대기업이 동 기업을 인수하여 현 차주는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타행대환을 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상 취급통화를 엔화에서 달러화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례1>

외화대출의 증빙상 통화와 대출취급 통화가 달라도 무방하며 기존 외화 대출의 만기연장, 대환 시에도 통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2>

현 차주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대출이 포괄승계 되었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의 기한연장 및 취급통화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행대환은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대기업 차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타행대환될 수 없습니다.

7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

질의내용

(은행 내규에 의해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용도제한 조치 이전에 시설자금 외화대출을 받아 만기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 내규에 의해 더 이상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용도제한 조치 이전에 취급한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내규에 따라 외화대출 기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규대출에 준하는 대환, 재대출의 형태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은행간 외화대출채권 매매)

해외은행(또는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이 거주자에게 취급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외국환은행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동 대출이 현행 규정상 용도제한에 해당되는데 매매를 통한 외화대출채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외국환은행이 외화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타행대환과 동일하므로 동 대출채권 매매는 타행대환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상 용도제한을 받는 외화대출일 경우 국내외국환은행의 해당 외화대출채권을 해외은행으로부터 매입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통화선도, FX스왑 계약체결 가능 여부)

<사례1>

외화대출금 상환 일정에 맞추어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수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2>

외화대출을 받은 후 자금을 대출용도로 집행하기 전에 외국환은행과의 FX스왑을 통해 원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례1>

대출금 상환 시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화대출과는 독립적인 거래이므로 가능합니다.

<사례2>

대출자금의 용도 집행 전 원화 환전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제도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타행대환 시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변경)

중소제조업체가 기존 외화대출을 타행대환 받고자 하는데 이전 은행에서 동 대출이 운전자금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환은행에서 관계증빙을 차주로부터 받아 동 대출자금이 시설자금인 점을 증명한 후 시설자금으로 타행대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최초 외화대출 용도가 실제로는 시설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대환은행은 용도 확인 후 시설자금 외화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부록 1>

외화대출 취급지침

- < 2008.1.24일 제정>
- <2008.11.7일 제1차 개정>
- <2010.4.28일 제2차 개정>
- <2010.7.1일 제3차 개정>
- <2016.4.18일 제4차 개정>
- <2017.5.22일 제5차 개정>
- <2018.7.2일 제6차 개정>

1. 외화대출 용도제한 기본방향

- 2010.7.1일 이후 외국환은행(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 이하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은 해외 실수요 용도의 자금에 한하여 허용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국내 사용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전년도 기준 제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활동이 제조업인 업체)

2.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외화계정과목)

-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계정(외화대출, 외화표시 원화대출, 전대차관자금대출*, 기타 대출 중 거주자에 대한 대출분)과 대내 외화사모사채에 대해 적용

* 단,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자금을 외국환은행이 전대하는 경우 제외

(적용 대상 기관)

□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에 대해 적용하며 “은행간 외화대출*” 은 제외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의 외국환은행(시행령 제14조 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간 외화대출

○ 증권사, 종금사 등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한 외화대출은 “은행간 외화대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적용대상임

- 다만,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용도제한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 가능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	적용 여부	비 고
I. 외화자산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	과거 「외화여수신규정」 상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	외화부채 계정과목 전대차입금 중 '정부차입금' 및 '공공차관자금'의 전대
	○	상기 계정과목 중 '국내금융기관차입금' 및 '기타전대차입금'의 전대
라. 기타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거주자에 대한 대출
8. 은행간 외화대출	×	
9. 외화사모사채	○	국내 발행 외화사모사채 취득 분
10. 내국수입유산스	×	

3.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

□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닌 해외 사용 (물품의 수입 또는 용역비 지급 관련 대외외화결제,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 발행 유가증권 매입, 대외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상기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로 인정

① 국내 수입독점업체 등을 통한 물품 구입

조달청이나 특정 독점업체의 수입을 통해서만 조달 가능한 일부 원자재 및 특정 물품의 구입을 위해 거주자간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 해외 실수요로 인정

- 외국환은행은 수입독점업체에 대한 독점관련 계약서와 해외 수출업자 및 수입업체에 대한 독점관련 계약서, 해외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독점권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관계 증빙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② 국내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앞 운전자금 송금

국내 본사가 해외현지법인(또는 해외지점) 등의 운전자금용으로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분류되면 해외 실수요로 인정

4.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내 사용 시설자금 외화대출

- 시설자금 대출금은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의 장이 시설자금으로 인정한 자금으로서 운전자금과 구분되어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이 가능한 자금
- 각 외국환은행별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 대출한도는 2010.6.30 일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설정
- 기 취급한 원화시설자금 대출을 거래기간 중에 외화 시설자금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허
-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취급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
 -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한도내 사용 점검 등을 위한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대출한도액 운용 보고서’ (월보)를 기한 (익월 7영업일내)을 준수하여 제출

5. 외화대출 사후관리

(자금용도의 증빙 확인)

- 대출실행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외화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 하되 기업의 용도와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감안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함
 - 자금사용의 내역증빙 제출시기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각행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차주가 이미 자기자금 등으로 미리 집행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실제 시설자금용도임이 확인되고 자금집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취급을 허용
- 거래증빙서류는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동 증빙상에 외화대출 실행사실 기재 후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차주에게 반납
 - 거래행태 등에 따라 원본 징구가 어려운 경우는 차주로부터 ‘이중대출 방지 협약서’ 및 ‘원본대조필 사본’ 등을 징구하여 사후관리
- 대출만기 연장(대환 또는 재대출이 아님) 시에는 최초 취급 시의 용도 증빙으로 가능

(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송금은행의 일치)

-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직접 해외 송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정거래 외국환거래 제도 등으로 특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 외화대출 취급 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해외송금 허용

- 대출자금의 용도의 미사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해외송금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을 허용

6. 기타 외화대출의 허용 여부 등

(타행대환 및 수입거래 결제자금 대출)

- 해외 실수요 및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타행대환 대출은 관계증빙 확인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허용
- 타행에서 취급된 수입거래 결제(유산스 및 L/C 만기 결제용 등)를 위한 대출도 실수요 증빙을 갖출 경우 허용

(보험계약대출*)

* 보험가입자가 보험 약관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외화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외화대출

-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도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외 실수요 또는 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용도인 경우 외화대출 취급이 가능

(신디케이션 외화대출)

- 신디케이션 외화대출의 만기연장 시 전체금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개별 은행의 최초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기연장’으로 인정하고, 최초 대출취급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야 함

(외화대출 채무인수)

- 차주가 변경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의 용도제한 요건을 구비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 차주 변경이 없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요건 제한 없음

-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합병·영업양수도, 상속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대외결제 통화와 외화대출 취급통화 간 불일치 허용)

- 외화대출 취급통화는 해외 실수요 증빙상 대외결제 통화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외화대출의 기한연장이나 대환 시에도 통화간 불일치 허용

7.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

(2010.6.3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

* 2010.6.22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부칙 개정에 따른 조치 반영

- 2010.6.30일 이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취급(계약분 포함)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 연장은 허용

(2007.8.1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

* 2008.12.1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부칙 개정에 따른 조치 반영

- 용도제한 조치 이전(2007.8.1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
- 단, 각행의 내규에 따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기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대환 또는 재대출 형태로의 취급은 불가능

- 한편, 용도제한 대상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 시 거래은행은 기존 대출계약상의 취급통화와 다른 통화로 기한연장 가능
- 아울러, 특정 시점까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한도 내 대출이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상환기한 연장은 한도 내에서 건별로 이미 실행된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 한도내 대출 약정상의 미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신규취급은 불가능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

* 2008.10.27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부칙 개정에 따른 특례사항 반영

- 2008.10.26일 이전에 체결된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외화대출은 2017.5.22일 개정 「외화대출 취급지침」에 따라 처리

8. 「외화대출 취급지침」 등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동 「절차」 및 「외화대출 취급지침」 등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용도제한 조치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각행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하나, 명확치 않은 경우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건전성조사팀)과 협의해야 함

<참고>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관련 조항

제2-7조 (정의) 이 절에서 “외화대출” 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말하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1>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외화대출금” 외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 화사모사채를 포함한다.

제2-8조 (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외국환은행이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전대
2.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대출업무

제2-9조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2010년 6월 30일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당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국내 시설자금용도의 외화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내용] 선집행 시설자금 외화대출 허용 기간 확대* <small>* 2016.4.18일 외화대출 취급지침 개정 시 변경</small>	
구 사례집 (p.24)	<p>(기집행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 증빙 인정기간)</p> <p><질의내용> 차주는 제조공장 공사대금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총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국내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일단 자기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차후에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마지막 지급하는 잔금의 경우 외화대출 계약일부터 기산할 때 3개월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합니까?</p> <p><답변사례> 외화대출 취급지침에 따르면 차주가 자기자금 등으로 미리 집행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용도 및 시기에 부합한 자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u>실제 시설자금 용도임이 확인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자기자금 등으로 이미 투자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가능합니다.</u></p>
신 사례집 (p.20)	<p>(기 집행 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 증빙 인정기간) <사례1></p> <p><질의내용> 외화대출 취급지침상 시설자금에 해외시설자금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동 자금이 이미 집행된 경우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요?</p> <p><답변> 국내시설자금뿐 아니라 해외시설대 수입 등도 시설자금에 해당되며 <u>인 경우 6개월 이내 기 집행된 자기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됩니다.</u></p>

[개정 내용] 외화대출은행과 송금은행의 불일치 허용

<p>구 사례집 (p.20)</p>	<p>(차주의 편의를 위해 송금은행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p> <p><질의내용> 차주가 송금편의상 (거리가 가까워서, 공휴일인 결제일에 맞추어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유, 차주기업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이유) 대출취급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송금하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p> <p><답변사례> 해외사용실수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의 경우 동 자금이 불필요하게 원화환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은행이 직접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취급은행과 해외송금은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와 같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주의 송금편의를 위해서는 대출취급은행과 해외송금은행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신 사례집 (p.25~ 26)</p>	<p>(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의 불일치) <사례4></p> <p><질의내용> 차주가 편의상(근거리라는 이유, 공휴일인 결제일에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유, 주거래은행이라는 이유 등) 대출취급은행이 아닌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p> <p><답변> 대출취급은행이 대출금 해외송금 내역(차주명의 일별잔액 증명서) 등 대출자금의 용도의 미사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해외송금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 타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합니다.</p>

[개정 내용] 실수요 증빙을 위한 원본 징구 의무 완화

<p>구 사례집 (p.25)</p>	<p>(외국환은행의 증빙 관리) <사례1></p> <p><질의내용> 차주가 비거주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을 해외에서 인도받기로 한 관계로 수입면장을 증빙서류로 구비할 수 없고 L/C도 타행에서 개설한 관계로 사본으로만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입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해외사용실수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본으로 제출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요?</p> <p><답변사례> <u><사례1>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외화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 이중대출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외화대출 실행 기관은 거래증빙 원본을 징구하여 외화대출 실행사실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차주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거래증빙 원본의 징구가 어려울 경우 은행 자체 내 규에 따라 판단하시되 차주로부터 반드시 확약서를 징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본증빙을 징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외국환은행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u></p>
<p>신 사례집 (p.21~22)</p>	<p>(실수요 증빙서류) <사례4></p> <p><질의내용> 차주가 비거주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을 해외에서 인도받기로 한 관계로 수입면장을 증빙서류로 구비할 수 없고 L/C도 타행에서 개설한 관계로 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수입결제용도로 사용되는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 외화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본 제출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p> <p><답변> 외화대출 취급은행에게 이중대출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은 원칙적으로 거래증빙 원본을 징구하여 외화대출 실행 사실을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u>다만, 거래관행 등에 따라 원본 징구가 어려운 경우는 이중대출방지 확약서와 원본대조필 사본을 징구하고 사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u></p>